

대법원 2015. 3. 12 선고 2014다83456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3. 12 선고 2014다83456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4. 11. 7 선고 2013나18223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3. 9. 26 선고 2013가소51513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A

피고, 상고인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5. 3. 12.

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3나18223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고영한

주심대법관이인복

대법관김용덕

대법관김소영